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0호

###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표 중 백석동란과 당하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백 석 동	- 백석동 일원 - 강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백석동 226-12, 26-14
당 하 동	- 강하동 일원 - 백석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백석동 226-12, 2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1호

###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 「주민투표법」 ” 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를 “19세” 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를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 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	명	요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입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2호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13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최대 변동계수”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월의 일일평균값을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 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대상자” 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지정폐기물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 적용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며,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 적용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이 경우 1톤당 15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지면적에 다음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함
-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
-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택지등 대지 조성원가
- 다. 부지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의해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톤당 단가는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
-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소요되는 톤당 단가는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